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 운영 규정

제정 2013.02.26. 규칙 제6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클리닉(이하 “스포츠클리닉”이라 한다)은 학생, 교직원 등(이하 “대학 구성원”이라 한다)의 건강관리와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조직) ① 스포츠클리닉에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원 및 부속한의원(이하 “부속의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

② 부속의원에 의원진료실, 물리치료실, 영상실을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진료실 : 대학 구성원의 진료 및 처치,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무
2. 물리치료실 : 대학 구성원의 물리치료·보건 등에 관한 사무
3. 영상실 : X-ray촬영, 의료영상의 저장·전송·관리 사무, 보안·관인관수·사무·회계·보험청구 사무와 그 밖에 각 부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무

③ 부속한의원에 한의원진료실을 두되, 대학 구성원의 진료 및 처치, 질병상담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소장) 스포츠클리닉에 소장을 두되, 부속의원의 의사 및 부속한의원의 한의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제5조(진료의사 등) ① 부속의원 등의 진료의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② 그 밖에 의원진료실 및 한의원진료실에 간호직을, 물리치료실 및 영상실에 의료기술직 등 스포츠클리닉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실에는 실의 장을 둘 수 있으며, 실의 장은 스포츠클리닉의 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스포츠클리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사회체육대학원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훈련처장, 사무국장, 스포츠클리닉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훈련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클리닉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리닉의 제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진료수가 조정에 관한 사항
4. 운영수익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지원 등) ① 운영회계는 기성회계 수입대체경비로 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분임계약관 및 분임출납관을 둘 수 있다.

② 물리치료실의 운영비를 제외한 스포츠클리닉의 운영비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성과급 등 지급) 제5조제1항에 의한 진료의사 및 진료한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9조(진료비 청구)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속의원 등의 진료 행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대학 구성원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인 의무 등) ① 부속의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대학 내 부서 및 구성원의 진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 요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진료 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속의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제623호, 2013.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